



제 429국회 (정기회)
제 9차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구성 변경 및 전문위원회 위원 요건 강화 등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35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민의견 수렴·조정 범위에 영유아보육정책 포함(안 제2조제1항) ...	2
2.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안 제3조 제3항)	4
3. 위원의 연임을 중임으로 변경 등(안 제5조)	9
4. 국가교육발전계획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12
5. 소관 사무로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등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	15
6.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등(안 제17조)	18
7.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시 국가교육위원회 동의 요구(안 제18조) ...	23
8. 전문위원을 연구전문위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25
9. 개정안 부칙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 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Ⅲ. 검토의견

1. 국민의견 수렴·조정 범위에 영유아보육정책 포함(안 제2조제1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목적 중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을 포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u>교육정책</u> 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 ----- ----- ----- <u>교육정책</u>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을 포함한다)----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2024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을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 중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영유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 등 영유아정책에 대한 중장기 정책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 및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의 해석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바 별도의 법령 개정은 불요하다고 판단되며, 법 제10조제1항제3호 사무에 한하여 영유아보육정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안 제3조 제3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를 추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교육부차관을 제외시키고, 교원단체 및 영유아보육교사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 ----- ----- ----- ----- ----- -----.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1.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
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
던 사람

2. ~ 6. (생략)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교육부차관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생략)

7. (생략)

④ ~ ⑧ (생략)

-----교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사로서

2. ~ 6. (현행과 같음)

③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교
원 및 영유아보육교사-----
-----3명

5.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요건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설립 및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의하면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교사” 대신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 국가교육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1명의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중 교부, 보수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표자로 구분됨³⁾.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서 교육부차관을 제외시키고, 교원단체 및 영유아보육교사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려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영유아보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포함한다)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3명”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관련한 개정안⁴⁾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4) 소위계류 - 의안번호 7355, 7956, 10780
미상정 - 의안번호 12934, 12837

[위원 구성안 비교]

구 분	현행	강경숙 의원안	고민정 의원안	김문수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	백승아 의원안	정을호 의원안
국 회	9	9	7	7	7	9	9
대통령	5	4	3	3	3	5	5
교육부(차관)	1	1	-	1	-	-	-
영유아 전문가	-	-	-	-	1	-	-
교육감 협의체	1	1	1	1	1	1	1
교원단체 ⁵⁾	2	3	3	2	3	3	3
대교협, 전문대교협	2	2	2	2	2	2	2
시도지사 협의체	1	1	1	1	1	1	1
교장 단체	-	-	1	-	-	-	-
교수 단체	-	-	2	-	2	-	-
교육 학회	-	-	1	-	1	-	-
학생·청년 단체	-	-	-	2	-	-	-
학부모 단체	-	-	-	2	-	-	-

5) 정을호의원안의 경우 교원단체 및 영유아보육교사단체

3. 위원의 연임을 중임으로 변경 등(안 제5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새로 임용(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의</u>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u>연임</u>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장과</u> <u>위원의</u> ----- ----- <u>중임</u> 할-----.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 ----- ----- <u>임</u> <u>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 <u>으로 한다.</u>

나. 검토의견

1) 연임을 중임으로 변경

- 연임(連任)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인데, 중임(重任)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으로⁶⁾, 임기를 마친 후 공백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기간이 있는 후에도 임용될 수 있는바, 양자는 연속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임기의 연속성에 구애받지 않고 재임용(또는 위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법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은 위원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 위원장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

- 개정안은 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새로 임용(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이 경우 새로운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⁷⁾, 보궐 위원의 임기는 3년이 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임.
- 보궐 위원의 임기를 개정안과 같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동시에 많은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위원회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정 수의 위원을 적절히 교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위원을 동시에 많이 확보하여 위촉하는 데 실질적

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⁸⁾.

□ 국가교육위원회는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정할 실익이 불분명하며,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 후임 위원 위촉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 신중 검토 의견임⁹⁾.

□ 국가교육위원회와 유사 성격 위원회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의 경우 새로 임기가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96p

9)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임기는 그간의 수시 임면에 따라 위원별로 상이하므로 위원 간 임기 종료시점이 불일치하다고 설명함.

4. 국가교육발전계획 조문 정비(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정하는 조항 내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호를 다른 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u>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 -----. 1. ----- <u>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에</u> ----- -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u>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u> 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 <u>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u>

② ~ ⑧ (생략)	<u>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u> <u>-----.</u> ② ~ ⑧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법 제10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1호)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제2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이와 반대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같은 조항 내 다른 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은 살펴보면¹⁰⁾ 교육일반(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과 초·중등교육(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다양한

10) 종전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임.

교육분야¹¹⁾를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 국가교육위원회는 조문 정비의 취지는 공감하나, 초·중등교육 등 특정 분야만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제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예: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5. 소관 사무로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등 추가(안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추가시키고,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시 조사·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4.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에 관한 사항</u>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2(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 ① 국회, 교육부장관</u>

	<u>또는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수립·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
--	--

나. 검토의견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¹²⁾, 국회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업무는 동 설립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¹³⁾,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업무가 동 업무와 관련성이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다면 동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 등을 추가하여 동 기관이 조사 및 검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원 증가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별개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둔 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현안에 대한 조사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기관 간 기능 중복과 역할 구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¹⁴⁾.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다.

1.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아울러 교육정책의 사회적합의를 추구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회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6. 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강화 등(안 제17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정원을 66명으로 늘리고, 위원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요건으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추가하며, 법에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전문위원회) ① (생략)	제17조(전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교육·영유아보육----- ----- ----- ----- -----.
<u><신설></u>	<u>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u>

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 또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영유아보육 또는 교육·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영유아보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u><신 설></u> <u><신 설></u> ③ <u>전문위원회의</u>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u> <u>5.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u> <u>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u> <u>⑥ 전문위원회는 자문 등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⑦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u> ----- -----.
---	--

나. 검토의견

-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전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사전검토 등 업무수행하며 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위원수, 위원 자격요건, 임기 등)을 법에서 규정하는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위원의 자격요건의 경우 법 시행령에서는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 다만, 국가교육위원회의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사전검토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둘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와 달리 개정안은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교육·영유아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위원수는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영유아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데, 교육 외 관련 분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⁶⁾

□ 끝으로, 개정안은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령에서는 전문위원회 종류 마다 성격을 고려하여 위원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45명을 넘지 않는바¹⁷⁾, 개정안 심사시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

1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6) 국가교육위원회는 타 분야와의 균형을 약화시킬 우려 등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요가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원과 관련 현 전문위원회 정원 대비 3배 이상 정원을 늘릴 경우, 전문위원회는 회의 개의를 위해 3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효과적인 논의를 위한 적정규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2.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무에 관한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조문대비표]

- 23 -

② <u>특별위원회의</u>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u>그 밖에 특별위원회의</u> ----- ----- -----.
--	---

나. 검토의견

-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두는 것이
데,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시 국가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위원이 위촉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를 적시에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보임.
-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시 국가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이
유가 위원의 전문성 및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면 전문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같이 별도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회와 별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
를 사전검토 또는 자문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규정한 취지를 고
려할 때, 위원 위촉을 전문위원회와 같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8. 전문위원을 연구전문위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전문위원의 명칭을 연구전문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u>전문위원</u> 을 둘 수 있다.	제19조(연구전문위원) ① ----- ----- ----- ----- <u>연구전문위원</u> -----.
② 제1항에 따른 <u>전문위원</u> 은 교육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 <u>연구전문위원</u> <u>은</u> ----- ----- -----.
③ 그 밖에 <u>전문위원</u> 의 자격,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연구전문위원</u> 의--- ----- -----.

나. 검토의견

□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바, 전문위원의 연구 수행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은 제19조에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구전문위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므로, 공포 후 법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안 부칙 제2조는 구법에 대해 형성된 신뢰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¹⁸⁾

¹⁸⁾ 위원회 위원의 수, 구성 방법 등 인적요건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으면 의결요건의 충족이나 종전 위원의 임기 및 구성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한다. 위원의 수나 구성 비율 등을 시행일에 맞추어

문 의 처
02)6788-5186

변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법제기준과 실제(2024), 국회사무처, 883p].